공무원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특정감사 결과 보고

Ⅰ 추진근거

❍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❍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❍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)
❍ 「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6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)

Ⅱ 감사개요

❍ **감사기간** : 2023. 10. 16. ~ 10. 27. ※ 사전자료수집 : 2023.10.10. ~ 10.20.(11일간)
❍ **대　　상** :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
❍ **감 사 반** : 청렴감사팀장 외 1명
❍ **범　　위** : 2022. 10. 1. ~ 2023. 9. 30.
　　기간 중 외부강의 · 회의 등 신고대상 건
❍ **내　　용**
-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
-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
-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
- 외부강의 요청 기관(단체)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회로 신고누락 방지

❍ **지적사항 : 없음**

Ⅲ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

❑ 외부강의등 신고현황

❍ **총괄 현황** ► 상세현황〔붙임1〕참조

부 서	총 신고건수	신 고 대 상			
		강의건수	강의자수	총 사례금	평균 사례금
11개	32건	30건	15명	3,925천원	131천원

※ 비대상(법령에 근거한 위원회, 요청자가 국가 · 지방자치단체인 경우) 2건 제외

❍ 유형별·직급별 현황

유형별(건)			직급별(명/건)				
계	강의·강연	발표·토론·심사 평가·자문·의결	계	4급	5급	6급	7급이하
30	13	17	15/30	-	1/3	6/11	8/16

❍ 겸직허가 현황 ▸ 2개부서 2명

❑ 세부 점검결과

❍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결과('22.10.01. ~ '23.9.30.)

점검대상	외부강의등 미신고	신고기한 미준수	사례금 등 착오신고	대가기준 미준수	출장여비 종복수령	월 횟수제한 미준수
30건(15명)	-	-	1건(1명)	-	-	-

❍ 수정신고 내역

소속 (현부서)	직	성 명	위반내역	강의 등 내용	비 고
○○○	○○○	○○○	사례금 착오신고 1건 (수령액 10만원, 신고액 8만원)	○○○	감사기간내 총4건의 신고 중 단순착오 1건 ☞ 붙임1 참고

❑ 주요 점검사례

✓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미신고·지연신고 여부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]

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**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**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3항]

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**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**하여야 한다.

☞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,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및 지연 신고한 사례는 없음.

✓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여부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]

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**대가로서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**

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)

구 분	전직원(직급에 관계없음)		비 고
상한액	1시간	최대(1시간초과시)	강의등 1시간당 기고 1건당
	400천원	600천원	

-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.
-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.
- **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'공무원 여비 규정'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수령 가능.**(중복수령 불가)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6항]

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(이하 "초과사례금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☞ 초과사례금 수령과 교통비 중복수령 건은 없었지만 사례금을 착오 신고한 사례가 1건 있음. 신고자는 감사기간내 총4건의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였으며, 이 중 착오신고 1건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신고자가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별도 조치 없이 완료함.

✓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

[외부강의 관련 복무 준수]

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공무원의 **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,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**하고 근무 시간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. 외부강의는 **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**하여야 하고 '소속부서의 장'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휴가·출장 등 **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**를 말하며 **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 공문서에 근거**하여야 함.

[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]

(제5항)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**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**

(제8항)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**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**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(제9항)공무원은 **월 3회를 초과**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**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**

☞ 횟수 상한(월3회)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참석한 경우는 없었으며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담당직무수행 관련으로 실시하는 등 직무수행 소홀사항은 없음.

❑ 총　　평

❍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
❍ 사례금 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례는 없었으며 신고건 중 오신고 1건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정신고 완료하였으며, 그 외 신고 건 모두 신고기한을 준수하며 신고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하였음.

❍ 매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사 실시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온 바, 향후에도 신고절차 선 공지,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**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누락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자 함.**

Ⅳ 행정사항

❍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여부 지속관리 및 신고절차 수시 공지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
- 법령(조례・규칙)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신고 제외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자인 경우 신고 제외

❍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기안을 통한 외부강의등 신고 철저

※ 새올행정> 감사> 외부강의등> 사용자> 부서 외부강의등 신고등록> 기안(수신처: 기획감사실)